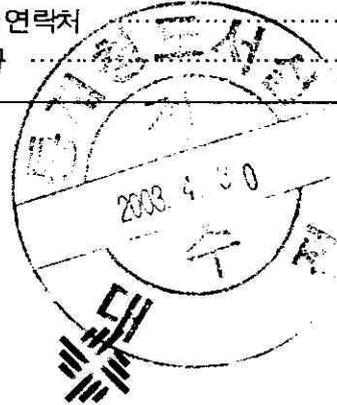


반론보도 · 정정보도

1.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개요	1
2. 언론사 대상 반론보도 요청	7
3.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요청	10
4. 민사 및 형사소송	13
5. 언론중재위원회 현황	14
6. 중재신청서 양식 및 작성요령	15
7. 정정보도 대응 사례	20
8. 언론보도 피해구제 고려사항	30
9. 언론중재 FAQ	32
※ 유관기관 연락처	41
※ 관련 법규	42



통 계 청
(공 보 팀)

1.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개요

가. 정의 및 사례

- 반론보도란 언론의 사실보도로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작성한 반론문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2003년 1월 14일자 '삼성 타워팰리스 내사'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의 삼성 타워팰리스 내사가 '새 정부의 삼성 손보기인가' 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중략)...

노무현 당선자나 인수위 관계자 그 누구도 검찰의 내사 사실을 몰랐으며, 취재중에 인수위는 조선일보로부터 어떤 확인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인수위는 삼성 등 특정 기업 또는 재계 전체와 갈등관계에 있지 않으며,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반론보도 신청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임채정

- 정정보도란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가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 책 「7. 정정보도 대응 사례」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경ECONOMY는 2002년 4월 17일자 34~37페이지 '정부부처 웹사이트 품질평가 조달청, 해양부 1등-통일부, 통계청 꼴찌'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 결과 통일부, 통계청이 최하위를 기록했고, 정세현 통일부장관과 오종남 통계청장이 웹사이트 관리에 소홀한 부처장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위 평가는 그 기준과 방법이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적용됐고, 통일부와 통계청은 어느 정부부처의 홈페이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홈페이지를 구축, 운용해 왔고 통일부장관과 통계청장이 그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반론이 있고,

한편 통계청의 경우 타부처와 달리 영문 홈페이지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은 잘못이 있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대응수단

- 단순한 오·탈자, 숫자·내용의 착오 등은 '바로 잡습니다'란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 10일자 B1면 '청년실업률 OECD국가 중 2위' 기사에서 'OECD 기준으로 계산하면 청년실업률 12.3%'라는 표현은 '청년실업률(남성) 12.3%'를 잘못 보도한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보고서에 통계치를 잘못 기재했으며 △남녀를 합한 전체 청년실업률은 9.7%로 △OECD 30개국 가운데 2위가 아니라 19위라고 밝혀왔습니다.

◇ 12일자 A5기사중 "야당측은 특히 4000억달러 대북 뒷거래..."는 4000억달러가 아니고 4000억 원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 14일자 8면 '봄소식 전하는 목련'의 사진설명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핀다'는 부분을 '부산에서 가장 일찍 핀다'로 바로 잡습니다.

◇ 24일자 D2면 '성남에 60~80평형 24가구 분양' 기사중 '성남시 시흥구 수정동'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의 잘못입니다.

- '독자마당' '신문을 읽고' 등 독자투고 코너의 활용도 손쉽고 유용한 반론수단이 됩니다.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통계청 홈페이지 「그건 이렇습니다」에 전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 이용자가 믿고 쓰게 최선
(조선일보 독자마당 / 2003.3.15.)

12일자 A30면에 실린 '통계자료 개방해 공유하자' 기고를 읽고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유익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통계청은 1996년부터 가공자료뿐만 아니라 원자료의 제공도 시작했으며, 2002년에는 387건을 제공했다. 하지만 기고자의 언급처럼 아직 원자료 공개가 많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사업체나 가구의 비밀이 보호되는 한도내에서 보다 많은 원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중략)...앞으로도 통계청은 통계조사, 자료처리 및 공표절차의 객관화를 통해 통계이용자가 믿고 쓸 수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 張致晟, 51. 통계청 공보팀장

- 국정신문 '언론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와 K-TV '언론 바로보기' 그리고 통계청 홈페이지 '그건 이렇습니다' 코너를 적극 활용합니다. 통계청 홈페이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통계청 엉터리 뉘씨 조사 망신'이라는 국민일보 기사(2003.1.30. 10면) 대한 설명

'빙씨가 서울에 50명, 전국적으로 800명이 넘는다'는 서울 빙선자씨(여, 50)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오니 우리청에서 작성, 공표하는 성씨 및 본관자료 이용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의 2000 인구주택총조사 성씨 및 본관 집계 결과 보도자료에는 氷씨 726명, 氷씨 1명으로 집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문에는 주로 氷씨 1명만이 보도됨에 따라, 氷씨도 1명뿐인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응답자의 답변과 호적에 기재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氷과 氷의 한글발음은 같으나, 한자 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氷씨를 기존의 氷씨와는 별도로 신규 성씨로 분류하였습니다.

향후, 氷씨를 재확인하여 氷씨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氷씨, 氷씨로 병행표기할 예정입니다.

나. 근거 법규(별첨)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언론중재규칙

다. 대상이 되는 보도내용

- 한 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적인 보도
-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보도로 피해를 준 경우
-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원래의 뜻과 다르게 표현된 보도
- 기타 인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라. 방법 및 절차

- 해당 언론사의 피해구제절차에 따라 이행을 요청합니다. 언론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반론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거친 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정정보도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언론사 대상 반론보도 요청

(정간물법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가. 기 간

-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내 용

- 반론보도 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 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협 의

-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합니다.

라. 거 부

-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 범 위

-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주 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예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아. 사례

독자나 보도 당사자가 조선일보 보도로 피해를 보았다고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사무국에 신고하면 그 내용은 즉시 상근 변호사에게 전달된다.

변호사는 그 내용에 따라 터무니없는 주장은 걸러내고, 가벼운 사안은 적절한 지면에 반론·정정보도를 하도록 즉시 조치한다. 변호사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면, 위원장에게 보고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게 된다.

위원회는 피해 당사자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취재 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조선일보 보도가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피해자측 주장이 인정되면 반론·정정보도 등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 때에는 반론·정정기사의 크기와 보도 시기 등을 결정하고, 조선일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지면을 통한 피해 구제를 시행한다.

※ 정정보도에 대한 준거

- 민법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요청

(정간물법 제18조 중재절차 등)

가. 신청 기간

-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이 경과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협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 협의 불성립된 날은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의 경우, 언론사에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요구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난 다음 날, 그 밖의 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의 발행일 다음 날이며, 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나. 중재 절차

-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중재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중재부는 중재기일에 양쪽의 진술을 듣고 합의가 되도록 적극 중재합니다.

-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 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인 언론사가 2회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언론사는 신청인의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천재지변 기타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한 경우는 예외)
- 중재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 중재 대리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으면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 합 의

- 중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신청인과 언론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론사는 합의된 내용대로 반론보도문이나 정정 보도문을 게재(방송)합니다.
- 언론사가 합의한 이후 반론보도문이나 정정 보도문을 게재(방송)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합의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중재 결정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부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재부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중재결정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신청은 중재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마. 중재불성립 결정

-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이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및 형사소송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성립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반론보도 청구의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를 할 때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부한 중재불성립 결정문이나 기타 중재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소명할 서류(이의신청서 부분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를 읽어 보시다.

지난해 언론사 승소율 39%에 불과

새정부, 오보 강력대응방침 밝혀
법원 "기자가 사실확인 위해 최선을 다했나 판단"

...(중략)...언론사의 승소율은 지독히 낮다. 2000년 언론사의 1심 승소율은 불과 9.1%였다. 10건중 9건은 졌다는 말이다. 한국언론재단이 발간한 '언론소송 10년의 판례연구'에서 보더라도 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언론관련 민사소송에서 언론사의 승소율은 27.6%에 그쳤다. 2001년 언론사의 승소율이 47.6%를 기록해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다면 지난해 39.1%로 다시 하락했다. / 내일신문 21면(3.18)

5. 언론중재위원회 현황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정기간행물·방송 등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청구의 사건을 접수하여 중재합니다.
- 중재위원은 현직 법관을 비롯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대학교수, 전직 언론인등 모두 75명의 사회 저명인사들입니다. 이중 2/5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1/5은 언론계 인사로 위촉됩니다.
- 중재위원회는 서울에 5개, 각 지방에 10개의 중재부를 두고 있으며, 각 중재부는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중재부의 장은 현직 법관입니다. 사무처는 사무총장 이하 2실 5팀 10개 지역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02년 총 신청건수는 511건으로 그중 취하는 223건 (43.6%), 합의 182건 (35.6%), 그리고 기타 106건 (20.7%)입니다. 기타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이 62건, 중재결정이 35건(동의 18건, 이의 17건) 그리고 기각과 각하가 9건입니다.

나. 중재신청 사항

○ 중재신청 이유

○ 신청인이 원하는 보도문

제목 :

내용 :

다. 언론중재신청서 작성 요령

○ 청구명란

-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를 구분해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를 모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건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신청서를 2건 작성)

○ 신청인란

- 개인인 경우 : ② ③ ⑤ ⑦ 항 기재
- 단체·법인의 경우 : ② ③ ④ ⑤ ⑥ ⑦ 항 기재
- 신청인이 복수인 경우 : 신청인란에는 별첨이라고 기재하시고, 별지에 신청인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날인해 첨부하십시오.(이 경우 대표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중재 대상란

- ⑧ : 해당 매체명
- ⑨ : 신문·잡지 등 간행물 → 년 월 일자 ○ 면
방송 → 년 월 일 시 분 「 」 프로그램
- ⑩ :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 ⑪ : 신청서 표지에는 “별첨”이라고 표기한 후 신문·잡지 등 간행물은 보도지면을 스크랩하여 첨부하고, 방송은 녹화 테이프와 녹취문을 첨부하십시오.

○ 중재 신청사항란

- “별첨” 표기하고 별지에 중재신청 이유와 반론 보도문 혹은 정정보도문을 작성하여 첨부 하십시오.

- 신청서 하단 신청인 부분에 서명·날인하십시오.
(단체·법인 : 대표 직인 날인)

라. 중재신청사항 작성요령

○ 중재신청 이유

- 신청인 소개 및 보도와의 연관성 서술
- 잘못 보도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반박내용 기재
-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 적시

신청인은~ 로서 ○○신문(방송) ○월 ○일자 ○면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문제된 보도내용 약술)~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사실은 ~(사실 적시 및 반박)~하다. 신청인은 이 보도로 ~(피해사실 적시)~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또는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 신청인이 원하는 보도문

- 예시 1) 반론보도문

- 제목 : 반론보도문(A형)
- 내용 : ○○일보가 (○○○ 방송이) 지난 ○월 ○일자 ○면에 “~”제하의 기사에서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본인은 이와 관련 ~한 사실이 없다. 사실은 ~하다. 반론보도 신청인 ○ ○ ○

- 제목 : 반론보도문(B형)
- 내용 : 본지가 (본 방송이) 지난 ○월 ○일자 ○면에 “~”제하의 기사에서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씨는 ~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예시 2) 정정보도문

- 제목 : 정정보도문
- 내용 : 본지가 (본 방송이) 지난 ○월 ○일자 ○면에 “~”제하의 기사에서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씨는 ~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7. 정정보도 대응 사례

가. 보도기사 요약

주간 매경Economy에서 2002년 4월 17일자 34면 『조달청·해양부 1등…통일부·통계청 꼴찌(정부부처 웹사이트 품질평가)』 제하의 보도 기사를 통해 36개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평가한 결과, 통계청 홈페이지가 16개 외청 중에서 최하위로 평가되었다고 밝히면서, 통계청장을 그 사진과 함께 게재하며 홈페이지 관리에 소홀한 기관장이라고 강조.

나. 경과 일지 (2002. 4. 10. ~ 5. 27.)

- 4.10. : 매경Economy에서 관련 기사 발견.
- 4.11. : 매경Economy 담당기자, 숙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주)대한정보서비스 등 기사 작성자 및 정보원을 상대로 작성경위 등 전화 질의.
- 4.12. : 행정자치부, 한국전산감리원 등에 평가의 타당성 및 객관성 검토 의뢰, (주)대한정보항의 방문 및 적절한 기준에 의한 재평가 요구.
- 4.13. : (주)대한정보에 금번 평가의 부당성 지적 및 재평가 요구 공문 발송.

- 4.15. : (주)대한정보로부터 재평가 결과통지 문서 접수, 보도기사 및 재평가 결과의 정밀분석 과정에서 산정오류 등 핵심오류 발견, (주)대한정보에 평가 오류에 대해 항의.
- 4.18. : (주)대한정보에서 과실 비공식 인정 및 공식 인정은 불가함을 통보, 통일부 등 피해 부처와 공동 대응방안 협의.
- 4.22. : 언론보도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자료 수집, 언론피해법률지원센터에 우리 청 사례에 대한 내용검토 요청.
- 4.23. : 행정자치부로부터 평가기준의 부적절성에 대한 회신 접수.
- 4.24. : 매일Economy 담당기자 항의 방문 및 정정보도 요청 공문 전달.
- 4.25. : 법률지원센터에서 사례 검토결과 통보.
- 4.29. : 매경Economy에서 정정보도 불가 공식 통보.
- 5월초 : 언론중재위원회 방문 및 중재절차 문의.
- 5. 7. : 위원회에 정정보도에 대한 중재심의 요청.
- 5.14. : 통일부와 병합심의회시 대응전략 협의.
- 5.16.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심의 개최 및 매경Economy에서 정정보도문 게재기로 합의.
- 5.27. : 매경Economy에서 정정보도문 게재.

다. 정정보도문 내용

매경ECONOMY는 2002년 4월 17일자 34~ 37페이지 '정부부처 웹사이트 품질평가 조달청, 해양부 1등-통일부, 통계청 꼴찌'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 결과 통일부, 통계청이 최하위를 기록했고, 정세현 통일부장관과 오종남 통계청장이 웹사이트 관리에 소홀한 부처장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위 평가는 그 기준과 방법이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적용됐고, 통일부와 통계청은 어느 정부부처의 홈페이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홈페이지를 구축, 운용해 왔고 통일부장관과 통계청장이 그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반론이 있고,

한편 통계청의 경우 타부처와 달리 영문 홈페이지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은 잘못이 있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라. 언론 오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였다
(통계정보과 이세영사무관)

○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일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에 대항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정정보도 청구는 반론보도나 오·탈자 등 착오를 바로 잡는 것과는 달리 담당 기자가 자신이 작성한 기사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입증 논리와 치밀한 사전 준비없이 이를 관철하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정보도보다 다소 완화된 대응수단인 반론 보도 역시 정간물법에 보도기사로 인한 피해자가 이를 언론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이를 수용하는 언론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매경Economy의 '정부부처 홈페이지 평가'에 대한 보도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관철시킨 사례는 우리청에서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과 다각도에 걸친 문제해결 노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실무자 제언

- 첫째, 보도기사를 접한 후 신속히 이에 대한 사실내용 확인과 초기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담당기자와 실질적인 정보제공자(Source)인 (주)대한정보서비스, 숙명여대 정보통신대학원 등을 상대로 보도의 목적, 추진경위, 보도기사 관련자간의 관계 등 주요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향후 언론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청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홈페이지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정보기술 전문기관인 한국전산감리원에 기사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문의하였다.

- 둘째, 보도기사의 여러 오류 중에서 입증이 용이한 핵심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다. 언론매체의 특성상 보도내용의 진위를 세밀하게 확인할만한 여유없이 이를 기사화하므로 기사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가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보도되어 세간에 알려진 기사내용을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측 입장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오류를 중심으로 발빠르게 대응하여 언론사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분야에 대한 담당기자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편타당하면서도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본 사례에서는 타부처 홈페이지는 한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평가한 반면, 우리청 홈페이지는 영문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평가한, 주최측의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고 이의 부당성을 강조함으로써 보도기사 작성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도록 유도하였다.

- 셋째, 이해 당사자를 직접 면담함으로써, 그간 우리 청에서 발견한 보도기사의 오류와 그 논거를 기초로 당사자를 설득하고 정정보도에 대한 우리 청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주)대한정보서비스를 방문하여 행정자치부와 한국전산감리원의 검토결과 등 그간 수집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보도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도록 하였고, 대화를 통해 정보제공자측에서 범한 실수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문제는 언론사를 어떻게 설득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하느냐 인데, 이 역시 매경 Economy 담당기자를 직접 찾아가 정식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시켰다. 언론사에서는 정정보도(언론사 사장 보고서안)에 대해 매우 민감해 하므로 다른 보상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 넷째, 우리청 주장에 대한 객관적 논거와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홈페이지 평가 분야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도내용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확인 공문을 전송해 주었으며, 이해당사자인 (주)대한정보서비스에서는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도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공문을 전송하도록 설득하였다.

또한, 피해당사자인 통일부, 농촌진흥청 등과 공조하여 언론사로 하여금 보도기사로 인한 피해가 자체 생각보다는 심각함을 체감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조치가 불가피함을 일깨워 주었다. 특히, 언론중재시 통일부 사건과 병합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도록 하였다.

- 다섯째, 정간법 등 관계 법령, 언론피해시 구제제도 등 언론피해사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대응전략 마련시 참조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법률지원센터 등 관련 단체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하여 언론사가 정정보도 요구를 거절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기존의 법원 판례 등은 언론사에 대한 설득 논리 마련을 위한 마인드를 심어 주었다. 또한, 언론피해법률지원센터에 법률적인 자문을 요청하여 언론중재가 실패하여 법원 제소까지 이르렀을 경우 그 판결 결과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였다.

- 여섯째, 언론중재 심의자료를 효과적으로 작성 하여 중재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끄집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를 거절할 경우에는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중재위원들의 판단에 의해 모든 결과가 좌우되므로, 중재신청서 작성시 관련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심의시간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심의시간이 30분 내외로 이 시간에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고 우리 청의 논거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 이해 당사자 양측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재위원들이 심의시간에 양측에서 적절하게 양보하도록 중재안(반론보도)을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명확하고 적절한 논거제시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합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합의문을 준비해 두는 것도 필수적이다.

- 이상과 같이, 본 사례는 우리청의 신속한 대응과 다방면에 걸친 설득 노력 등이 어울어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정정보도는 민법 제750조에 명시된 손해배상청구에 그 법적근거가 있어, 언론사에서도 이를 수용할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사 스스로 이를 수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언론사에서 범한 명백한(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논거를 준비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언론을 상대로 우리청의 주장을 설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으로 담당자의 확고한 의지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8. 언론보도 피해구제 고려사항

가. 취재원의 성격

- 공식발표 : 발표내용이 결과적으로 진실하지 않고 하여도 취재당시 발표를 의심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고 발표내용을 과장, 왜곡하지 않는 한 확인취재를 하지 않아도 면책된다.
- 비공식 발표 : 이 경우는 사실확인 의무가 언론사에 부과된다.
- 타언론기관의 보도 : 판례의 입장이 상반되어 있다.

나. 보도영역의 성격

- 사적영역 : 특정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자유보다는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한다.
- 공적영역 : 다수의 이해와 관련된 공적영역에 대한 보도는 실명과 초상의 사용이 자유롭고 확인 취재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언론사는 면책된다.

다. 보도대상의 성격(공인의 범위)

- 기준 : 대통령, 전현직 국무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행정부관리, 전현직 국회의원, 검사, 군인, 경찰관, 변호사, 연예인, 방송진행자, 언론인 등등
- 판례 : 정치인, 도의회 의원, 유명 핵물리학자, 그룹회장, TV 뉴스앵커, 인기연예인.

라. 보도내용의 성격

- 의견표현 : 표현의 자유로 두텁게 보호하며 명예 훼손으로 다룰 수 없고 의견표현이 객관적이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그 전제가 된 사실을 함께 보도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 의혹보도 : 언론사가 의혹 내지 문제를 제기할 때는 피해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자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보도내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주장 및 그 자료를 함께 보도해야 한다. 취재한 자료가 피해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등 또는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면책된다(판례).

9. 언론중재 FAQ

가.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의 차이는?

-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의 사실보도로 피해를 입은 분이 해당 언론사에 자신의 주장을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는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가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정보도청구는 중재절차와 상관없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중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중재신청서 1부.
- 문제가 된 보도문(방송의 경우 녹음, 녹화물과 보도기사 전문) 1부
-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1부
- 기타 증빙자료

다. 반드시 본인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만 중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언론중재신청은 보도에 직접 언급되었거나 해당 보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가 하실 수 있습니다.

- 비록 어떤 보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보도의 내용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개인 혹은 단체가 아니라면 중재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 본인에 대한 기사임이 분명하나 실명이 보도되지 않았을 때는?

- 실명이 보도되지 않고 모씨 등으로 보도되거나 영문 이니셜 등으로 보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보도가 자신에 관한 것임을 주위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언론사가 본인에 대한 보도임을 인정할 경우에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 일부의 잘못을 동종 업계나 직업인 전체의 잘못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 일부 업체나 개인의 잘못을 보도하면서 마치 업계 전체의 잘못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업계나 직업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명의로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 기사와 상관없는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 이는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의한 피해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의 내용과 상관이 없음을 밝히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 내가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 잘못된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는?

-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에 관한 보도 내용에 대해 팬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위원회가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보도에 언급된 당사자가 직접 중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도의 내용중 팬과 관련된 사항이 없다면 팬 여러분은 중재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 칼럼이나 사설 등 의견 기사에 대해서도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중재신청 대상이 되는 보도는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이며, 의견을 밝힌 보도는 중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칼럼이나 사설과 같이 의견을 주로 담은 기사라 할지라도 의견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밝힌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신문도 중재신청 대상이 되나요?

- 중재신청의 대상이 되는 매체는 정간물법에 의해 등록된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와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매체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뉴스, 웹진 등의 내용은 저희 위원회의 중재대상이 아닙니다.
- 언론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보도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오프라인 매체에 보도된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중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차. 중재위원회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거나 언론사를 징계할 수는 없나요?

-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심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기간행물 기사의 내용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했을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해 정정 보도를 명령하거나 언론사를 징계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카. 잘못된 보도에 대해 언론사의 사과를 받고 싶은데요?

-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시는 내용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혹은 추후보도로서, 사과 보도는 중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재를 신청하시는 분은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다만, 언론사가 이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중재위원회의 직권으로 언론사가 사과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과보도를 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89헌마160 결정)이 있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타. 잘못된 보도가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중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며, 늦어도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신청을하실 수 있습니다.
- 자신에 대해 잘못된 보도가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상기 기간 내에 중재신청을하시면 됩니다. 만일 중재 신청 기간이 지나 버렸다면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등을 하시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파. 언론사에 직접 정정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를 했을 경우, 언론사는 9일 이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9일이 지나도록 원하는 보도문이 게재되지 않는다면 언론사와의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언론사와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저희 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 인터넷으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중재신청서는 해당 중재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팩스나 인터넷으로는 중재신청을 접수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거.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나요?

- 저희 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으시기 위해서는 법원에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너. 언론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중재위원회를 거쳐야 하나요?

-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은 저희 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시는 방법 외에 법원에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론보도를 청구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다른 법적 절차는 중재위원회의 중재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중재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부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중재결정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중재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신청은 중재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이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신청인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러. 중재결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언론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 신청인과 언론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론사는 합의된 내용대로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을 게재(방송)해야 합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언론사가 2회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언론사는 신청인의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방송)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언론사가 합의했거나 합의 간주된 이후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을 게재(방송)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관할 중재부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언론중재위원회가 발부하는 중재화해조서 정본을 제출하여 합의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 신문구독 강매 등에 의한 피해는?

- 신문사가 원하지 않는 신문구독을 강요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는 저희 위원회가 직접 도와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각 신문사나 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터 (02-734-9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 신문이나 방송광고에 의한 피해는?

- 광고의 내용은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희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이 아닙니다.
- 광고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공정거래위원회(02-504-4161),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02-6360-6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 연락처

▷ 국정홍보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7층
- 대표전화 : 02-3703-2114

▷ 언론중재위원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 중재 상담 : Tel 02-725-0050
Fax 02-730-9420
- 기 획 실 : Tel 02-732-6011~3
Fax 02-730-5487, 732-7585
- 중재심의실 : Tel 02-732-6031~3
Fax 02-730-9420

▷ 언론피해구조본부(언론인권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3층
- 전화: 02-583-0660
- 팩스: 02-583-0661
- E-mail : webmaster@presswatch.or.kr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문화관광부]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定期的으로 발행하는 新聞·通信·雜誌·其他刊行物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言論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1991.12.14, 1995.12.30>

1. “定期刊行物” 이라 함은 동일한 題號로 年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新聞·通信·雜誌 其他 刊行物을 말한다.
2. “一般日刊新聞” 이라 함은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 등에 관한 報道·論評 및 輿論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刊行物을 말한다.
3. “特殊日刊新聞” 이라 함은 產業·科學·宗教·教育 또는 體育등 特定分野(政治를 제외한다)에 局限된 사항의 報道·論評 및 輿論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刊行物을 말한다.
4. “外國語日刊新聞” 이라 함은 外國語로 발행하는 一般日刊新聞 또는 特殊日刊新聞을 말한다.
5. “一般週刊新聞” 이라 함은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 등에 관한 報道·論評 및 輿論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每週 1회 발행하는 刊行物(週 2회 또는 月 2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特殊週刊新聞” 이라 함은 産業·科學·宗教·教育 또는 體育등 特定分野(政治를 제외한다)에 局限된 사항의 報道·論評 및 輿論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每週 1회 발행하는 刊行物(週 2회 또는 月 2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通信” 이라 함은 電波法에 의하여 無線局의 許可를 받아 外國의 通信社와 通信契約을 체결하고 國內外的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등에 관한 報道·論評 및 輿論등을 傳播함을 目的으로 행하는 送受信 또는 발행하는 刊行物을 말한다.
8. “雜誌” 라 함은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産業·科學·宗教·教育·體育등 全分野 또는 特定分野에 관한 報道·論評·輿論 및 情報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동일한 題號로 月 1회이하 定期的으로 발행하는 製册된 刊行物을 말한다.
9. “其他刊行物” 이라 함은 第2號 내지 第8號의의 刊行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刊行物을 말한다.
10. “發行人” 이라 함은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代表者를 말한다.
11. “編輯人” 이라 함은 發行人이 選任한 者로서 定期刊行物의 編輯에 관하여 責任을 지는 者를 말한다.
12. “印刷人” 이라 함은 發行人이 選任한 者 또는 發行人과 印刷契約을 체결한 者로서 그 定期刊行物의 印刷에 관하여 責任을 지는 者를 말한다.
13. “支社” 또는 “支局” 이라 함은 記事取材등을 目的으로 定期刊行物의 發行所 所在地의의 地域에 설치된 事務所를 말한다.

第3條 (兼營禁止등) ①日刊新聞(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通信은 相互兼營 할 수 없으며, 放送法에 의한 放送局(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을 兼營할 수 없다.<改正 1991.12.14, 1995.12.30, 1999.2.8>

②日刊新聞·通信 또는 無線放送을 經營하는 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の 2分の 1 이상을 所有하는 者(人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日刊新聞 또는 通信을 經營하는 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の 2分の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改正 1995.12.30, 1999.2.8>

③人統領令이 정하는 大企業 또는 그 系列企業은 日刊新聞이나 通信을 經營하는 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の 2分の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④日刊新聞이나 通信을 經營하는 法人의 理事(合名會社の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の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 중 그 상호간에 民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그 總數의 3分の 1을 넘지 못한다.<改正 1998.12.31>

⑤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日刊新聞 및 通信의 發行人에게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89.12.31, 1998.12.31>

第4條 (外國資金의 出捐) 定期刊行物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者가 外國人 또는 外國의 政府나 團體로부터 財産의 出捐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捐을 받은 날부터 15日 이내 또는 登錄申請시에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8.12.31]

第5條 (研修) ①發行人은 從事者의 能力과 資質向上을 위한 研修制度를 設置·운영한다.

②發行人은 共同으로 從事者의 研修를 위한 機構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第6條 (機能의 보장) ①發行人은 勞使協調의 精神에 따라 從事者의 勤務環境·處遇 기타 福利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發行人은 從事者의 編輯 및 製作活動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日刊新聞 또는 通信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改正 1991.12.14, 1995.12.30>

1. 一般日刊新聞은 타블로이드 2倍版 4面 基準의 新聞紙를 時間當 2萬部이상 印刷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輪轉機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附隨印刷施設

2. 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은 輪轉機 1臺이상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附隨印刷施設

3. 通信의 발행에 있어서는 電波法에 의한 無線通信施設

④第3項의 規定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定期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關한法律에 의하여 登錄된 印刷所와 印刷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定期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가 印刷施設(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關한法律에 의하여 登錄된 印刷所의 施設에 한한다)을 보유하고 그 印刷施設만으로써 당해 定期刊行物을 발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30>

第2章 登錄

第7條 (登錄) ①定期刊行物を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발행하거나 法人 기타 團體나 機關이 그 소속원에게 無料로 普及할 目的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定期刊行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改正 1989.12.31, 1995.12.30, 1998.12.31>

1. 題號

2. 種別 및 刊別

3. 發行人·編輯人(外國定期刊行物의 內容을 변경하지 않고 國內에서 그대로 印刷·配布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印刷人의 姓名·生年月日·住所(發行人 또는 印刷人이 法人이나 團體인 경우에는 그 명칭, 主事務所의 所在地와 그 代表者의 姓名·生年月日·住所)

4. 發行所의 所在地

5. 削除 <1998.12.31>

6. 削除 <1998.12.31>

7. 發行目的과 발행내용

8. 주된 普及對象 및 普及地域

9. 日刊新聞 또는 通信의 경우는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該當施設

②發行人이 法人 또는 團體인 경우 代表理事 또는 代表者를 發行人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代表理事 또는 代表者를 發行人으로 할 수 없는 正當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다른 理事나 任員을 發行人으로 할 수 있다.<新設 1995.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を 登録하고자 하는 者は 登録事項중 刊別을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 日刊(隔日 또는 週3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週刊(週2회 또는 月2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月刊
4. 隔月刊
5. 季刊
6. 年2回刊
7. 削除 <1995.12.30>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を 登録한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은 지체없이 登録證을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1989.12.31, 1998.12.31>

⑤削除 <1998.12.31>

⑥削除 <1998.12.31>

⑦이미 登録된 定期刊行物の 題號와 동일한 題號의 定期刊行物は 登録할 수 없다.<改正 1998.12.31>

⑧削除 <1998.12.31>

第8條 (필요적 게재사항) 定期刊行物에는 그 登録의 番號와 年月日·題號·刊別·發行人·編輯人·印刷人·發行所 및 發行年月日을 게재하여야 하며, 數人の 編輯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責任分野와 함께 各自의 姓名을 게재하여야 한다.

第9條 (缺格事由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は 定期刊行物の 發行人 또는 編輯人이 될 수 없다.<改正 1995.12.30>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大韓民國에 住所를 두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다만, 刑法 第87條 내지 第90條·第92條 내지 第101條, 軍刑法 第5條 내지 第8條·第9條第2項·第11條 내지 第16條 또는 國家保安法 第3條 내지 第9條의 罪를 犯하여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은 경우에는 執行猶豫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者를 포함한다.
 4. 保安觀察法에 의한 保安觀察處分이나 社會保護法에 의한 保護處分の 執行중에 있는 者
 5. 이 法에 위반하여 罰金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形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이 法에 위반하여 登錄이 取消된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또는 編輯人으로서 그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7. 未成年者, 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8.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 되지 아니한 者
- ②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또는 編輯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月이내에 發行人 또는 編輯人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新設 1995.12.30>
- ③法人이 아닌 者는 定期刊行物중 日刊新聞이나 一般週刊新聞 또는 通信을 발행할 수 없다.
-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定期刊行物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普及할 目的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改正 1998.12.31>

1. 外國政府 또는 外國의 法人이나 團體
2.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가 그 代表者로 되어 있는 法人 또는 團體
3. 外國人 또는 外國의 法人이나 團體가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比率이상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者
 - 가. 日刊新聞의 경우에는 100分の 30
 - 나. 通信의 경우에는 100分の 25
 - 다. 日刊新聞 및 通信을 제외한 定期刊行物의 경우에는 100分の 50

⑤定期刊行物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者가 外國人 또는 外國의 法人이나 團體로부터 財産의 出資를 받을 때에는 外國人投資促進法 第5條,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告된 사실을 立證하는 서류를 申告한 날부터 15日 이내 또는 登錄申請시에 文化觀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新設 1998.12.31>

第10條 (納本) ①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定期刊行物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定期刊行物 2部를 즉시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納本하여야 한다.<改正 1989.12.30, 1998.12.31>

②第1項의 경우에 納本한 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家는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第11條 削除 <1998.12.31>

第12條 (登錄取消의 審判請求등) ①文化觀光部長官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의 登錄을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月이하(隔月刊이하 定期刊行物의 경우는 3回이하)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定期刊行物의 발행정지를 命할 수 있다.<改正 1989.12.30, 1995.12.30, 1998.12.31>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사항을 變更登錄하지 아니하고 任意로 變更하여 그 定期刊行物을 발행한 때
2. 發行人(法人 또는 團體를 포함한다) 또는 編輯人이 第9條의 缺格事由등에 해당된 때
3. 第6條第3項 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유지하지 못한 때
4. 削除 <1995.12.30>
5. 第4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財産의 出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②文化觀光部長官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을 登錄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하(隔月刊이하 定期刊行物의 경우는 6回이하)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定期刊行物의 발행정지를 命하거나 法院에 定期刊行物의 登錄取消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89.12.30, 1995.12.30, 1998.12.31>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사실이 있는 때
2. 定期刊行物의 내용이 登錄된 發行目的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3. 淫亂한 내용의 定期刊行物을 발행하여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에 대한 第1審 裁判은 發行人의 普通裁判籍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合議部の 관할로 한다. 法院은 審判請求를 접수한 날로부터 3月이내에 裁判하여야 한다. 登錄取消審判事件의 請求·審理·裁判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④登錄取消審判事件에 대하여는 非訟事件節次法을 準用한다.

⑤削除 <1998.12.31>

第12條의2 (職權登錄取消) ①文化觀光部長官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を 登錄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定期刊行物の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1998.12.31>

1. 正當한 사유없이 登錄 후 6月(年 2回刊의 경우는 1年)이내에 당해 定期刊行物を 발행하지 아니한 때
2. 正當한 사유없이 1年이상(季刊·年 2回刊의 경우는 2年이상) 당해 定期刊行物の 발행을 중단한 때

②削除 <1998.12.31>

[本條新設 1995.12.30]

第12條의3 (登錄取消審議委員會) ①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발행정지의 命令·登錄取消審判의 請求 및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處分の 公正하고 客觀적인 審議를 위하여 文化觀光部長官所屬하에 登錄取消審議委員會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審議委員會의 구성과 審議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8.12.31]

第12條의4 (定期刊行物 題號의 사용제한) 第12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審判事件에 대한 法院의 判決 또는 第1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때에는 登錄이 取消된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및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는 그 取消된 날부터 2年이내에는 그 取消된 定期刊行物의 題號로서 定期刊行物을 발행할 수 없다. [本條新設 1998.12.31]

第13條 (청문)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의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8.12.31]

第14條 削除 <1998.12.31>

第15條 (外國定期刊行物의 支社등의 設置) ①外國定期刊行物의 支社 또는 支局을 國內에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文化觀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89.12.30, 1998.12.31>

②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改正 1989.12.30, 1998.12.31>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許可條件을 위반한 때
3. 당해 外國定期刊行物이 國憲을 문란하게 하거나 國家의 威信을 損傷하게 하는 記事를 게재한 때

第3章 침해에 대한 救濟

第16條 (反論報道請求權) ①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事實적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 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이내에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者(이하 “言論社”)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30>

②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記事의 本文과 게재를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1995.12.30>

③言論社가 反論報道掲載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日刊新聞과 週 1回이상 발행하는 定期刊行物 및 通信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日이내에 같은 定期刊行物에, 그밖의 定期刊行物은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事實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改正 1995.12.30>

④反論報道는 事實의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改正 1995.12.30>

⑤反論報道의 내용은 讀者投稿의 形式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改正 1995.12.30>

⑥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記事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⑦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新設 1995.12.30>

第17條 (言論仲裁委員會) ①言論報道로 인한 紛爭을 仲裁하고 定期刊行物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言論仲裁委員會(이하 “仲裁委員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1995.12.30>

②仲裁委員會는 40人이상 8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은 學識과 經驗 및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文化觀光部 長官이 위촉하되, 委員의 5分の 2이상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한 者로 하고 委員중 5分の 1이상은 言論界 人士중에서 위촉한다.

<改正 1989.12.30, 1995.12.30, 1998.12.31>

③仲裁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을 두되, 각각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④仲裁委員會의 委員長·副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⑤政黨의 黨籍을 가진 者(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를 포함한다)와 公務員(法官의 資格을 가진 者 및 教育公務員은 제외한다) 및 言論社에 소속된 現職 言論人은 仲裁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改正 1995.12.30>

⑥仲裁委員會의 委員은 法律과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職務를 행하며, 職務上 어떠한 指示도 받지 아니한다.

⑦仲裁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當과 實費補償을 받을 수 있다.

第18條 (仲裁節次등) ①被害者 또는 言論社는 言論報道로 인한 反論報道請求權 또는 民法 第764條에 의해 訂正報道등을 구하는 權利에 관한 紛爭에 대하여 第16條1項이 정하는 기간(第16條第1項의 節次를 거친 경우에는 被害者와 言論社間 協議 不成立된 날부터 14日)안에 書面으로 仲裁委員會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다. 仲裁申請에 관하여는 第16條第2項 및 第7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95.12.30>

②仲裁는 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된 仲裁部에서 하되, 仲裁部の 長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委員이어야 한다.

③仲裁部の 長은 필요한 경우 당해 仲裁事件의 대상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言論社에 仲裁對象 表現物이나 그 寫本의 제출을 命하거나 仲裁에 필요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改正 1995.12.30>

④仲裁는 申請接受日로부터 14日이내에 하여야 하며 仲裁部の 長은 지체없이 仲裁期日을 지정하여 當事者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者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改正 1995.12.30>

⑤第4項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仲裁申請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을 取下한 것으로 보며, 言論社인 被申請人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趣旨에 따라 反論報道 또는 訂正報道를 이행하기로 合議된 것으로 본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疎明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30>

⑥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성립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仲裁部는 職權으로 當事者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申請趣旨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仲裁決定을 할 수 있고, 仲裁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仲裁不成立決定을 한다. 다만, 職權으로 仲裁決定을 하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仲裁申請 接受日부터 21日이내에 하여야 한다.<新設 1995.12.30>

⑦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成立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決定은 裁判上 和解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當事者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송달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仲裁部에 異議申請을 한 경우에는 그 決定은 효력을 상실한다.<改正 1995.12.30>

⑧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發行人에게 是正을 勸告할 수 있다.

⑨仲裁의 節次와 仲裁部의 구성방법, 그 管轄, 事務處의 組織, 是正勸告의 방법과 節次, 仲裁委員會委員의 手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 (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 ①仲裁委員會의 仲裁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法院에 反論報道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없다. 反論報道請求의 訴는 第18條第6項의 仲裁不成立決定 또는 第7項의 異議申請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被害者는 反論報道請求의 訴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申請을 併合하여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5.12.30, 2002.1.26>

②第18條第1項의 規定은 民法 第764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新設 1995.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한 第1審 裁判은 被告의 普通裁判籍 所在地의 地方法院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假處分節次에 관한 規定에 의하여 裁判하며, 請求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第16條第3項 내지 第5項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反論報道의 게재를 命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5.12.30, 2002.1.26>

⑤反論報道請求事件의 裁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 規則으로 정한다.<改正 1995.12.30>

第19條의2 (不服節次) ①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한 裁判에 대하여는 抗訴하는 이외에 불복을 申請할 수 없다.

②第1項의 不服節次에서 審理한 결과 反論報道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가 棄却되었어야 함이 判명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한 裁判을 取消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경우 言論社가 이미 反論報道義務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申請에 따라 取消裁判의 내용을 報道할 수 있음을 宣告하고, 申請에 따라 被害者로 하여금 言論社가 이미 이행한 反論報道와 取消裁判의 報道를 위하여 필요한 費用 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損害의 賠償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30]

第20條 (追後報道請求權) ①定期刊行物에 의하여 犯罪嫌疑가 있다거나 刑事上의 措置를 받았다고 報道된 者는 그에 대한 刑事節次가 無罪判決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終結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月이내에 書面으로 言論社에 이 사실에 관한 追後報道的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1995.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追後報道的 내용은 請求人의 名譽나 權利回復에 필요한 범위에 局限한다.

③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 을 제외하고는 反論報道請求權에 관한 이 法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95.12.30>

第21條 (補助金)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仲裁委員會에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21條의2 (權限 등의 위임 및 委託) ①文化觀光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 의한 權限 일부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文化觀光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納本에 관한 業務를 非營利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8.12.31]

第4章 罰 則

第2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30, 1998.12.31>

1. 第3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2.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財産의 出捐을 받은 者
3.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定期刊行物을 발행한 者
4. 第12條第1項, 同條第2項 또는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여 定期刊行物을 발행한 者
5.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國內에 外國刊行物의 支社 또는 支局을 設置한 者

第2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發行人 또는 編輯人으로 就任한 者
2. 第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編輯人으로 選任한 發行人

第24條 (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1995.12.30, 1998.12.31>

1. 第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2.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3. 削除 <1998.12.31>
4. 削除 <1998.12.31>
5.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本을 하지 아니한 者
6. 削除 <1998.12.31>
7. 削除 <1998.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改正 1989.12.30, 1998.12.3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이내에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89.12.30, 1998.12.31>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1989.12.30, 1998.12.31>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제3979호,1987.1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廢止된 言論基本法을 다른 法律에서 準用 또는 引用한 경우에 定期刊行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法을 準用 또는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3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廢止된 言論基本法에 의하여 登錄 또는 승인된 定期刊行物과 許可·申告 또는 設置된 支社·支局 및 言論仲裁委員會는 이 法에 의하여 登錄·승인·許可·申告 또는 設置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年刊으로 발행하던 刊行物은 既發行刊行物을 첨부하여 이 法의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登錄하여야 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 廢止된 言論基本法 第12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日刊新聞 또는 通信을 經營하는 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의 2分の 1이상을 所有한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1988年 12月 31日까지 이 法 第3條의 規定에 적합하도록 所有株式 또는 持分을 處分하여야 한다.

附 則 <제4183호,1989.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文化公報部の 分離·改編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4>省略

<25>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5項, 第4條, 第7條第1項·第3項·第6項, 第10條第1項, 第11條第1項, 第12條第1項·第2項, 第13條, 第14條第1項·第2項, 第15條第1項·第2項, 第17條第2項 및 第24條第2項 내지 第4項중 “文化公報部長官”을 각각 “公報處長官”으로 한다.

<26>내지 <29>省略

第5條 및 第6條 省略

附 則 <제4441호,19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7號, 第3條第1項 및 第6條第3項第3號중 “電波管理法”을 각각 “電波法”으로 한다.

⑥내지 ⑨省略

附 則 <제5145호,1995.12.30>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6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定期刊行物로서 이 법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의 登錄對象에서 제외된 定期刊行物은 이 법 施行후 定期刊行物 登錄番號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이 법 施行日부터 60日 이내에 定期刊行物 登錄證 原本을 登錄廳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또는 編輯人이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施行日부터 1月 이내에 發行人 또는 編輯人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放送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 題目 “(訂正報道請求權)”을 “(反論報道請求權)”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2項 내지 第6項중 “訂正”을 각각 “反論”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는”과 同條第6項중 “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가”를 각각 “放送局이”로 하며, 同條에 第8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放送에 公表된 事實적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的 請求할 수

있다.

第42條중 “放送에 관한 訂正報道請求”를 “放送”으로, “訂正報道請求事件”을 “反論報道請求事件”으로 한다.

②綜合有線放送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의 題目“(訂正報道請求權)”을“(反論報道請求權)”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2項 내지 第7項중 “訂正”을 각각 “反論”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綜合有線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는”과 同條第6項중 “綜合有線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가”를 각각 “綜合有線放送局이”로 하며, 同條第9項을 第10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9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同條第10項(중전의 第9項)중 “綜合有線放送에 관한 訂正報道請求”를 “綜合有線放送”으로, “訂正報道請求事件”을 “反論報道請求事件”으로 한다.

①綜合有線放送에 公表된 事實적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이내에 綜合有線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的 請求할 수 있다.

第4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中전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中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の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 則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 則 <제5620호,1998.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 第4項·第5項 및 第24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定期刊行物중 新聞·雜誌 및 기타刊行物에 대하여는 1999年 1月 1일부터 施行하고, 定期刊行物중 通信에 대하여는 2000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職權登錄取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定期刊行物을 登錄한 者에 대하여 職權登錄取消을 하는 경우에는 第12條의 2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1. 正當한 사유없이 당해 定期刊行物을 登錄후 1年(年 2回刊의 경우에는 2年)이내에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00年 6月 30日(年 2回刊의 경우에는 2001年 6月 30日)

2. 正當한 사유없이 月 1回 이하 발행되는 당해 定期刊行物의 발행을 1年이상 중단한 경우 : 2001年 6月 30日

③(定期刊行物의 題號의 사용제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登錄이 取消된 定期刊行物의 경우에는 第12條의 4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第1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 <제5926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생략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중 “放送法에 의한 放送局(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 또는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이하 “綜合有線放送”이라 한다)을”을 “放送法에 의한 放送局(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을”로 하며, 同條第2項중 “日刊新聞·通信·無線放送 또는 綜合有線放送을”을 “日刊新聞·通信 또는 無線放送을”로 한다.

②생략

附 則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民事訴訟法 第693條”를 “민사집행법 제261조”로 하고, 같은 제4항 본문중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단서중 “民事訴訟法 第697條 및 第705條”를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로 한다.

<41>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9.6.30 대통령령 제16440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기타간행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2. 컴퓨터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3. 월 1회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본조신설 1996·6·13]

제2조 (동일계열의 기업등)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계열의 기업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계열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1990·4·14, 1996·6·13>

②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계열

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중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집단에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6.30>

제3조 (일간신문 및 통신발행인의 자료제출) ①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1·3, 1998·2·28, 1999.6.30>

1. 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주주(주주가 100인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소유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현황 또는 지분소유현황과 그 점유율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현황 및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유무

②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은 당해 자료를 당해연도 결산기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간신문 및 통신의 겸영금지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

금 제출자료의 현지확인을 하게 하거나 발행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3, 1998·2·28>

제4조 (외국자금의 출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자금의 출연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자금출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0·1·3, 1998·2·28, 1999.6.30>

1. 재산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연단체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
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제5조(부수인쇄시설) 법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이라 함은 재판시설을 말한다.<개정 1996·6·13, 1999.6.30>

제2장 등록

제6조 (등록) 법 제7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2·12·21, 1997·12·31, 1998·2·28>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과 이력서
2.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 가. 자기소유의 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등의 서류
 -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대여등의 계약서
 - 다. 타인소유의 시설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4.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개설허가증명서 및 외국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5. 법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쇄계약서 및 당해 인쇄소의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7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 1998·2·28>

1. 정기간행물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발행인·편집인 또는 인쇄인이나 시설 또는 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 해당 각호에 규정된 서류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는 정기간행물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8·2·28>

제8조 (등록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관광부장관이 정기간행물을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일 간 : 가
2. 통 신 : 나
3. 주 간 : 다
4. 월 간 : 라
5. 격 월 간 : 마
6. 계 간 : 바
7. 연 2회간 : 사

[전문개정 1999.6.30]

제9조 (등록제외대상 정기간행물)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학습자료를 총지면의 100분의 60 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
2. 상업광고를 총지면의 100분의 60 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

[전문개정 1999.6.30]

제10조 (납본)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등록후 처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2.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주간신문(과학·종교·교육분야를 제외한다)·잡지(정치·경제·과학·종교·교육분야를 제외한다)중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간행물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
의 납본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6.30]

제11조 및 제12조 삭제<1999.6.30>

제13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삭제<1999.6.30>

②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6.30>

③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및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이 된다.<개정 1998·2·28>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6.30>

⑨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위임된 정기간행물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 하에 시·도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차관”은 “행정 또는 정무부시장·부지사”로,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은 “시·도공보관”으로,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시·도법무담당관”으로 본다.<개정 1998·2·28, 1999.6.30>

[전문개정 1996·6·13]

제14조 (등록증의 반납)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증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6·6·13, 1998·2·28>

제15조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2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본조신설 1999.6.30]

제16조 및 제17조 삭제<1999.6.30>

제18조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8·2·28>

1. 외국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19조 (허가증)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8·2·28>

제20조 (지사설치 변경허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8·2·28>

1.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증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의 호적등본(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및 이력서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 (허가증의 반납)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증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8·2·28>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22조 (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8·2·28>

제23조 (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 (중재신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99.6.30>

제26조 (중재관할권등) ①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
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
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 (중재절차) ①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
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6·13>

④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
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
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재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 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개정 1996·6·13>

⑤당사자가 법 제1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6·6·13>

⑥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개정 1996·6·13>

⑦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 (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등) ①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6·13>

②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중재부는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신설 1996·6·13>

④중재부는 법 제18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신설 1996·6·13>

제29조 (시정권고) ①법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개정 1996·6·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개정 1996·6·13>

④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개정 1996·6·13>

⑤삭제<1996·6·1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개정 1996·6·13>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⑧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 제30조 (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 ④사무처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 제31조 (관계서류의 보존) ①중재위원회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중재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6·13>

- 제32조 (예산등) ①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8·2·28>
- ②중재위원회는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8·2·28>

- 제33조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신청·관할·중재절차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33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주간신문·월 1회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중 무료로 보급되는 정기간행물,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 2회이하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과 제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간행물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등록·변경등록
2.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증 교부
3.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의 재산출자에 관한 입증서류 접수
4.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
5. 법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명령 및 등록취소심판청구
6.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직권등록취소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8.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9.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표시
10.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본대상 정기간행물의 고시
1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필증의 교부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에 관한 업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관한 납본업무를 제외한다)를 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된 비영리법인·단체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1999.6.30]

제33조의3 (등록현황 보고등) ①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등록한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등록현황을 당해 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매년말 기준으로 정기간행물등록일람표를 발행하여 이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6.30]

제34조 (과태료 부과)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8·2·28, 1999.6.30>

②과태료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5조 (수수료의 납부) ①정기간행물의 등록등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1.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 1만5천원

1의2. 정기간행물 변경등록신청 : 1만3천원

2.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 : 1만원

3.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 : 5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입증지)로써 당해 신청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개정 1999.6.30>

제36조 (서식)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등의 서식은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0·1·3, 1998·2·28>

부 칙 <제12422호,1988.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권한 위임에 관한 제9조의 규정과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34조의 규정중 동 권한위임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언론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은 1988년 5월 1일전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것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의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별로 분류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관련서류를 이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사무국은 이 영에 의한 중재위원회사무처가 조직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중재위원회사무처의 업무를 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계속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2898호, 1990. 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2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19>내지 <23>생략

부 칙 <제12979호, 19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3783호,1992.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025호,1996.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공보처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별로 분류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류를 이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나목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⑤내지 <22>생략

부 칙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722호,1998.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내지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0항중 “공보처차관”을 “문화관광부차관”으로, “공보처 신문방송국장”을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 칙 <제16440호,1999.6.30>

-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관련서류를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등록제외대상 정기간행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로서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정기간행물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언론중재규칙

제1조(준거) 언론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2조(신청서) ①언론중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대리인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첨부한다.

③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피신청인 수에 상응하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미성년자의 중재행위) ①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서만 중재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중재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정대리인이 중재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증) 사무처 또는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부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보고) 중재신청을 접수한 사무총장 또는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언론중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6조(중재부의 지정등) ①위원장은 제5조의 보고내용을 검사하여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관할 중재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관할할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위원장은 설치된 중재부의 중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중재부의 중재위원을 지정하여 중재신청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각등) ①중재부는 반론보도청구 내용이 법 제1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②중재부는 추후보도청구 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재 신청을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③신청인이 법 제18조 제1항의 기간을 도과하여 중재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중재부의 장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8조(중재기일 지정등) ①중재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정한다.

②중재에 관한 기록등 그 사무를 보조하는 자(이하 "중재서기"라 한다)는 최초의 중재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한 중재부의 장의 출석요구서를 중재신청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지에 빠른 등기우편(빠른등기우편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전달한다.

③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부분도 발송한다. 당해 중재사건에 관하여 사무처에 출석하거나 중재기일에 출석한 자에게는 직접 송달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④당해 중재사건의 중재기일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일을 고지로서 행한다.

⑤중재부의 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중재기일) ①중재기일에는 관할 중재부의 중재위원, 당사자 또는 그 중재대리인이 참석한다.

②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얻어 중재기일에 참석할 수 있다.

제10조(중재대리인) ①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중재부는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중재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한다.

제11조(중재) ①중재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중재위원 3인 이상으로 한다.

②중재부의 장은 발언을 허용하고 그 명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발언을 금할 수 있다.

제12조(진술) ①중재기일에서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진술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한다.

②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상응한 부분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술로 진술할 때에는 중재서기는 그 내용을 중재조서에 기재한다.

제13조(증거조사) ①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 및 증거조사와 이해관계자의 출석요구는 중재부의
합의로 결정한다.

② 증거조사는 증인신문, 서면조사, 검증, 감정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14조(중재신청의 취하) ①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 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취하서 부분이나 중재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한다. 다만, 중재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중재조서) 중재서기는 중재기일마다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중재부의 장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중재의 성립) ① 중재의 결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될
때에는 즉시 중재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과 중재서기
가 서명 날인하여 중재기록에 편철한다.

② 중재가 성립된 때에는 중재서기는 중재화해조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여 중재부의 장과 중재서기가 서명
날인한다.

1. 당사자와 대리인
2. 중재대상
3. 중재신청 취지
4. 중재신청 사항
5. 중재화해조항
6. 중재년월일
7. 중재부

③ 제2항의 중재신청사항의 기재에서는 중재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중재부의 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중재기일에 출석하였던 중재위원 중 1인이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제17조(중재결정문등)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은 관여 중재부의 중재위원들이 서명날인하여 중재기록에 편철한다.

제18조(중재화해조서의 송달) ① 중재서기는 중재화해조서의 정본과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합의성립통지서, 중재조서 정본을 중재성립일 또는 합의로 보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달 증명으로, 또는 직접 당사자와 그 중재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중재화해조서의 정본과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중재조서 정본은 그 뜻을 기재하고 중재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중재부의 장의 인을 찍어야 한다.

제19조(중재화해조서 등본등 송부) 중재부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를 위한 중재화해조서 등본 또는 중재조서 등본의 송부촉탁을 받은 때에는 중재화해조서 등본 또는 중재조서 등본을 송부한다.

제20조(중재결정문등의 송달) 중재서기는 중재결정문의 정본, 중재불성립결정문의 정본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달 증명으로 또는 직접 당사자와 그 중재대리인에게 송달한다.

제21조(중재결정문 등본의 송부) 중재부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를 위한 중재결정문 등본의 송부촉탁을 받은 때에는 중재결정문 등본을 송부한다.

제22조(경정) 중재화해조서의 경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기록의 열람등) ①당사자와 이해관계자는 중재기록의 열람, 등사 또는 정본, 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중재서기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중재기록의 정본, 등본, 초본에는 그 뜻을 기재한 후 중재서기가 기명하고 중재서기의 인을 찍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4조(누설금지) 중재기일에 참석한 중재위원 및 중재서기와 기타 사무처 직원은 중재기일의 내용, 진행사항, 결과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중재기일이 공개되었거나 중재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추후보도청구·절차등) 추후보도청구권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위임)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반론보도 . 정정보도

발행일 : 2003년 4월 일

발행인 : 오 종 남

발행처 : 통계청 공보팀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인쇄처 : 협성문화사

Tel : (042)627-8893